

2015년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 회의록		간사	의장
		최재영	배장준
참석 의원	장준민, 김현준, 박수동, 김이두, 손영식, 최운락, 이상민, 서병익, 김규식 (재적 의원 11명 중 9명 참석)	회의일시	2015. 12. 18.(금) 16:00 ~ 17:30
회의 결과			
<p>1. 심의사항 1 : 일반대학원 학칙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공명칭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“HRD컨설팅학” 전공을 “HRD컨설팅” 전공으로 변경 ○ 대학원학위종별에 전공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“HRD컨설팅” 전공 신설(경영학석사 학위, 경영학박사 학위) <p>▶ 원안대로 심의함</p> <p>2. 심의사항 2 :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조(구성)를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추어 대학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정(안) : 제4조제1항을 “본 위원회는 교직원 대표 4인, 학생 대표 3인, 동문 대표 1인, 관련전문가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, 서기 1인을 둔다” 으로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교직원 대표 4명 : 기획처장, 총무처장, 교수협의회추천 1인, 직원노동조합추천 1인 2) 학생 대표 3명 : 총학생회 추천 3인 3) 동문 대표 1명 : 총동문회 추천 1인 4) 관련 전문가 1명 : 총장 추천 1인 <p>▶ 개정(안)으로 결의함(찬성 8인, 반대 1인)</p> <p>3. 심의사항 3 :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6조(선출 및 위촉) 중 기획처장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입안 및 집행을 하며,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,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교수 대표로 적합하지 않음. <p>▶ 결의되지 않음(찬성 4인, 반대 2인, 기권 3인)</p> ○ 제10조(회의) 중 회의 현장에서의 안전 채택이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것 			

은 회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.

- 개정(안) : 제10조(회의) 중 제3항을 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을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의원 2/3 이상이 참석하고, 참석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.” 으로 한다.

▶ 개정(안)으로 결의함(찬성 7인, 반대 2인)

- 제10조(회의) 중 대학평의원회에는 각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로부터 제안된 안건은 의장과 부의장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정되어야 함.

- 개정(안) : 제10조(회의) 중 제4항을 “의장은 교내 구성원들로부터 안건을 접수받아 부의장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.” 를 신설한다.

▶ 개정(안)으로 결의함(찬성 6인, 반대 3인)

4. 기타사항

- 김현준 의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였으나,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기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음.
- 김현준 의원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8조(사임 및 추천)에 따라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각 구성단위에 후임자 추천을 요청함.
- 다음 정기회의를 2016년 1월초에 개최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논의하기로 함.
- 필요시 2016년 1월 중순 이후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함